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승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35
----------	------

발의년월일 : 2020년 6월 30일

발 의 자 : 노승재 의원

찬 성 자 : 김정태, 송명화, 최 선
이광성, 박기재, 김제리
이병도, 경만선, 최기찬
박순규, 홍성룡, 김생환
강동길, 김소영, 채인묵
의원(15명)

1. 제안이유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 등을 줄이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나. 예방·지원사업의 대상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치매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보호시설
3.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6조(사업의 내용) ① 제5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경찰관서,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